e-러닝 운영 규정

제정 2003. 03. 01.
제11차 개정 2016. 08. 0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의 3에 의거 e-러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5.5.31)

제2조(정의 및 명칭) ① "e-러닝"이라 함은 정보통신 등의 수단을 통하여 가상공간(인터넷)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말한다. (개정 2005.5.31)
② "e-러닝"라 함은 가상교육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을 말하며, 우리대학에서 개발한 교과목 및 우리대학이 회원으로 가입한 가상교육대학연합 회원교의 교과목을 포함한다. (개정 2005.5.31)
③ e-러닝의 서비스 명칭은 "상지대학교 e-러닝"으로 한다. (개정 2005.5.31)

제3조(조직) ① (삭제 2016.08.02)
② (삭제 2016.08.02)
③ (삭제 2016.08.02)

제4조(심의) ① e-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e-러닝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교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, 전공과목은 전공교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05.5.31.)(조 명칭 및 개정 2016.08.02.)
② (삭제 2016.08.02)
③ (삭제 2016.08.02)
④ (삭제 2016.08.02)

제5조(교육개발 및 운영지원) ① 교과목 개발 및 제작은 인재교육팀에서 담당하고, 이에 따른 운영지원은 시스템운영부와 학사관리부에서 담당한다. (항 개정 2008.6.30) (개정 2012.3.14. 2015.09.16)
② 인재교육팀에서는 교직과에서 선발한 학생에 한해 "수업행동 분석"을 위한 동영상을 촬영을 지원한다. (항 신설 2008.6.30) (개정 2012.3.14. 2015.09.16)
(조 개정 2005.10.18) (개정 2005.10.18, 2007.6.4)

제6조(e-러닝 강좌 개설 및 채택) ① 개발한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양교과위원회 또는 전공교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6.08.02)
② e-러닝 강좌는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계절학기에도 개설할 수 있다. (개정 2005.5.31)
③ 수강신청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일반 교과목수강신청 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④ e-러닝 강좌 개설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5.5.31)

제7조(개설교과목 제한) 개발하여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학과(부, 군)의 정규 교과목수의 50% 이내로 한다.

제8조(수강인원) 교과목의 강좌당 수강기준인원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학점인정) 동 규정 제6조에 의거 개설된 강좌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10조(취득학점) ① (항 삭제 2005.5.31)
② e-러닝 강의로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학칙시행세칙 제11조(수강신청 한도 학점) ⑦항에 따른다. (개정 2005.5.31, 2011.1.11)

제11조(성적평가)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성적분류등급으로 표시하고, 출석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.

제12조(책임시수 인정) ① e-러닝 강의를 담당한 교원의 강의시간은 교원의 책임시간에 산입 한다 (개정 2005.1.24, 2005.5.31)
② 외부 프로그램으로 e-러닝 강좌를 운영할 경우 책임시수는 1/2을 인정하며, 교수 본인이 개발하여 분반할 경우에는 한 강좌는 100% 인정하고, 분반된 강좌는 1/2만 인정한다. (항

신설 2005.1.24) (개정 2005.5.31)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기타사항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79, 2005.1.24)

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587, 2005.5.31)

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84, 2005.10.18)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368, 2006.4.10)

이 규정은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595, 2007.6.4)

이 규정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784, 2008.7.7)

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268, 2009.2.27)

이 규정은 200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0, 2011.1.12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52, 2012.3.14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29, 2015.09.16)

이 규정은 2015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07, 2016.08.02)

이 규정은 2016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.